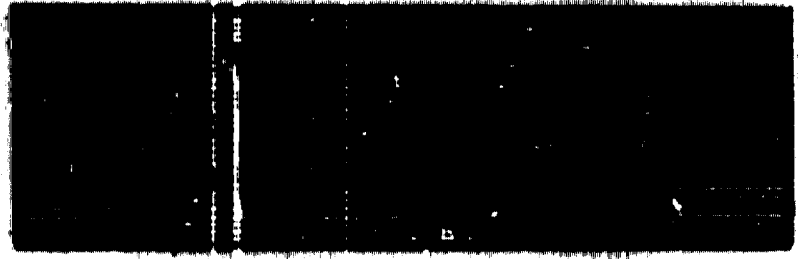


제 268 호
1972. 8. 12.

발행일: 서울특별시청 양 목 세
월 정: 1972년 8월 12일
전화 75-7834
인 제: 서울특별시 출판발간증



차 례

- 조 례
 - 제 779조: 서울특별시 영덕속원중 수리요지 2
 - 제 780조: 서울특별시 특수중학교의장규칙
제정요지 2
- 장 례
 - 제 781조: 서울특별시 덕수고등학교 설립요지 시행규칙 4
 - 제 782조: 서울특별시 덕수고등학교 설립요지 시행규칙 5
 - 제 783조: 서울특별시 덕수고등학교 설립요지 시행규칙
제정요지 5
- 부 록
 - 제 784조: 서울특별시 덕수고등학교 설립요지 시행규칙 6
- 사 례 8

1. 서울특별시청 양 목 세
2. 서울특별시청 양 목 세

서울특별시

조 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법중수업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백 식
1972년 8월 1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19 호

서울특별시영역시민중수업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우암국가 공원으로서 서울특별시영역 풍모가 언저하거나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영역시민중(이하 "영역시민중"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영역시민중수여) ①영역시민중은 영포서식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여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영역시민중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 3 조 (영역시민중) 이 조례가 공포된 날에 대하여 영역시민중을 받은 자가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6 조 제 2 항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초과할 수 있다.

제 4 조 (취소)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역시민중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회) ①서울특별시 시의회가 기정된 때까지 제 2 조 및 제 3 조의 의결을 대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민중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55.8.15자 서울특별시조례 제 80 호 서울특별시영역시민중수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특수순락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백 식
1972년 8월 1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20 호

서울특별시특수순락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에 서울특별시특수순락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 6. 최후 지급유연설치수당 지급분포표 중 "20,000 원"을 "52,000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 여자기술원 설치규칙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립 시장 박 세 식
1972년 3월 11일

㉓ 서울특별시규칙 제 1237 호

서울특별시립 여자기술원 설치규칙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 여자기술원 설치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부) 서울특별시립 여자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녀를 위원이 된다.

1. 마포로 기린에서 출도되어 직업교육을 배양하는 자.
2. 부녀부속한 부녀로서 유익한 구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기부여성" 다만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부한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임원자의총복) 기술원장, 임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소정의 항목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직정정압) 원장은 기술원에 임원하는 자와 상임직원의 신장 파악 및 계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5조(질병의치료) 기술원에 임원하는 자는 검진할 설치규칙 검진 결과 성명

기타 경미한 질병은 기술원에 부속된 진료소에서 치료한다.

제6조(퇴원) 원장은 임원자(이하 "원생"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퇴원을 명한다.

1. 시소한 6개월이상의 소정의 직업교육을 마친자로서 생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기타 시장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교과과정) 원생에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학과를 교육한다.

제8조(기술교육) 원생에게 사합적 배양을 위하여 원생의 적성에 따라 다음 각호 과정의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1. 자물차 운전과
2. 이·이유과
3. 양재·원날과
4. 간호·모조과
5. 생활과

제9조(생업자금지급) 시장은 자물능력 있어 퇴원하는 자에게 생업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직업단선) 시장은 소정의 기술을 습득하여 취직을 원하는 자에게는 직업을 알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모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지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 876 호 서울특별시립 행복원설치규칙 시행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제지한다.

작성, 각자는 행정관리 기차으로 한다.

③대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계획위원 3분위 2 이상의 참가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

④아이디어 심의는 개최위원 4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심사) ①제출된 아이디어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 심사하고 예비심사는 행정과장이 본심사는 위원회에서 한다.

②예비심사는 안 3 제 2 호서식의 예비심사표에 따라 본심사제 최종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통과된 것은 즉시 본심사에 문의한다.

③본심사는 필요 제 2 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예비 여부를 결정한다.

④필요에 따라 본심사는 서면 심사도 가능할 수 있다.

제 14 조중 "필요제 2 호"를 "필요제 4 호"로 "필요제 3 호" 서식"을 "필요제 5 호서식"으로 한다.

제 11 조 제 1 항중 보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1 급 30,000 원
- 2. 2 급 20,000 원
- 3. 3 급 10,000 원
- 4. 장 비 3,000 원 이내

제 1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 조 (보급) ①심의회와 전이키보 결정한 아이디어는 즉시 시장경제 보고하고 주관과에 이송 설비 보급한다.

②제택 아이디어의 심사지시를 받은 주관과는 이를 즉시 시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예산상 당해연도에 실시할수 없을 때에는 이를 다음 년도에 실시할 수 있다.

"필요제 2 호"를 "필요제 4 호"로, "필요제 3 호"를 "필요제 5 호"로 하고 필요제 2 호와 필요제 3 호를 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명

● 서울특별시훈명 제 359 호

서울특별시직원제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2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청 앞 내지

서울특별시직원제안규정중개정 규정 서울특별시직원제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필요 제 1 호 서식을 필요제 2 호로 한다.

제 6 조 (제안서의 제출) ①제안을 하고자 하는자는 필요제 1 호 서식의 제안표 2 봉과 제안서 5 봉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서는 16 점 규격으로 유인물보 하여 제안표와 함께 봉투에 넣어 봉합후 앞면인 직, 성명과 근무장을 기재하고 "제안서"라 해서 행정과장 참조 서울특별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제한회계수출허리) ① 접수된 제한을 받고 제2조 제1항의 제한회계수출에 기록하고 받고 제3조 제1항의 제한 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접수된 제한회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심사회기준) ① 제한을 심사할 때에는 심용성, 경제성, 효율성, 사회적성 등을 1항, 2항, 3항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② 작용남용은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으나 우상이나 노력면에서 상회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등급을 지양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심사) ① 제한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예비심사는 심사관과의 본심사는 서울특별시 아이미어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한다.

② 예비심사는 받고 제4조 제1항의 예비 심사요에 의해 본심사 회부에 관한 심사 결정한다.

③ 본심사를 위원회에서 받고 제5조 제1항의 제한 심사요에 의하여 최종 여부를 결정한다.

④ 예비심사에 통과된 제한은 위원

회에 심부하고 심사일 7일 전까지 다른 사유없이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가. 제한받고
나. 제한심사요
다. 제한 심사회 접수일 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조 제1항,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5조 (등급) ① 제1항의 심사회 등급 기준은 제1항의 등급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구	등급	비	구	비
1	급	50,000원	30,000원	
2	급	40,000원	20,000원	
3	급	30,000원	10,000원	
합	급	5,000원	3,000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심사위원) ① 서울특별시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서울특별시의 관공로 100번지 서울특별시청에 상주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서울특별시의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의 공무원이 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를 일체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5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7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9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0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1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3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5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6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7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8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9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0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1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2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3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5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6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7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8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0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1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2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3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5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6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7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8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9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0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1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2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3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5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6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7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8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9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70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71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72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73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7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75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76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77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78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79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0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1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2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3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5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6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7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8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9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90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91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92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93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9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95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96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97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98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99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00조 제1항을 삭제한다.

사 령

◎ 1972. 8. 9.

서대문구우편 지방행정주사보 신 보 승
마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이 구 영
한강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맹정과 지방행정주사 신 영 권
충무과 근무를 명함

충무과 지방행정서기 박 배 과
부내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조 영 규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권 영 권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이 의 때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아동보호소 지방행정주사보 유 강 때
개령원 근무를 명함

아동보호소 지방행정주사보 임 배 승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이 기 승
송로구 근무를 명함

은수지도과 지방행정주사보 기 원 국
은수행정과 근무를 명함

일북구 지방행정주사 박 김 후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신 수
아동보호소 근무를 명함

은수행정과 지방행정서기 박 장 의
은수지도과 근무를 명함

시 율 특 영 사 령